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96호 2018. 3. 26.(월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8-20호 도로명 개별고시 ····· 3
○ 하동군 고시 제2018-22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김영*)····· 5
○ 하동군 고시 제2018-23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김영*)····· 6
○ 하동군 고시 제2018-24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이지*)····· 7
○ 하동군 고시 제2018-25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강주*)····· 8
○ 하동군 고시 제2018-26호 옥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고시····· 9
○ 하동군 고시 제2018-31호 농업생산기반 정비(개간)사업 시행인가 및 고시····· 11
○ 하동군 고시 제2018-32호 도로명 개별고시····· 15
○ 하동군 고시 제2018-33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하동군(적량면))····· 17
○ 하동군 고시 제2018-34호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18
○ 하동군 고시 제2018-36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이매*)····· 19
○ 하동군 고시 제2018-3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주)하동에너지)····· 20
○ 하동군 고시 제2018-38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고영*)····· 21
○ 하동군 고시 제2018-3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박순종 외 1인)····· 22
○ 하동군 고시 제2018-40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배재*)····· 23
○ 하동군 고시 제2018-4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24
○ 하동군 고시 제2018-45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오덕* 외20인)····· 26
○ 하동군 고시 제2018-46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주)제이피엔디 이강*)····· 27
○ 하동군 고시 제2018-47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점용사용)허가 고시공고(하동군수) 28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18-174호 하동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외1건 일부개정 29
○ 하동군 공고 제2018-191호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9
○ 하동군 공고 제2018-287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0
○ 하동군 공고 제2018-305호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9
○ 하동군 공고 제2018-317호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 입법예고····· 76
○ 하동군 공고 제2018-318호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시행규칙 입법예고·· 87
○ 하동군 공고 제2018-333호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145
○ 하동군 공고 제2018-334호 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52
○ 하동군 공고 제2018-332호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56

회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조정실 (055)880-2041, 행정2041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 2018-4호 2018년 영산강 섬진강 환경지킴이 제34구간 채용공고 ····· 161
○ 하동군 공고 제 2018-156호 2018년도 하동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사업 공모 ····· 176
○ 하동군 공고 제 2018-168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 182
○ 하동군 공고 제 2018-171호 2018년 하동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 183
○ 하동군 공고 제 2018-194호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 ····· 203
○ 하동군 공고 제 2018-249호 하동군 인구증대 슬로건 공모공고 ····· 212

하동군 고시 제2018 - 20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2. 14.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섬진강대로 3352-1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9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2.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1211-6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섬진강대로 3352-1	2018 0214	2009 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826-2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48	2018 0214	2009 0702	삼신봉과 산청군과 연결되는 삼신봉 터널 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99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179-34	2018 0214	2007 0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15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280	2018 0214	2007 0618	사적 217호인 하동읍성앞을 지나가는 도로로서 문화재 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958-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궁항길 532-12	2018 0214	2009 0302	궁항리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46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남양안길 7-1	2018 0214	2007 0618	남양이라는 자연마을명에 지역특성을 합성하여 남양안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두양리715-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길 118-47	2018 0214	2008 0402	두방산과 두방재 아래에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47-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37	2018 0214	2007 0618	신기마을과 궁항마을을 지나가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1179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길 285-6	2018 0214	2007 0618	이명산의 달운재 밑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16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김영구	생년월일(성별) 1957,03.30
	전화번호 010-5320-8259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570330-1*****
	주 소 전남 광양시 눈수4길 65, 104동801호(마동, 우림필유아파트)	

장소
경상남도 지례리 1175-13 (인근지번 양보면 지례리 7-3)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11㎡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01~2018.12.31

점용 · 사용의 유형
구거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하 동 군 수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23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김영식	생년월일(성별) 1957.11.06
	전화번호 010-3597-9806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571106-1******
	주 소 경남 산청군 신안면 둔철산로 15번길 76	

장소 경상남도 지례리 1175-13 (인근지번 양보면 지례리 7-4)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5㎡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01~2018.12.31			
점용 · 사용의 유형 구거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하 동 군 수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24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이지은	생년월일(성별) 1967.09.16
	전화번호 010-8665-9547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70916-1******
	주 소 전남 광양시 폭포사랑길 94-30, 3동 201호 (금호동,장미아파트)	

장소
경상남도 지례리 1175-13 (인근지번 양보면 지례리 7-5)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4㎡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01~2018.12.31

점용 · 사용의 유형
구거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하 동 군 수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25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강주성	생년월일(성별) 1963.04.07
	전화번호 010-4801-9547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30407-1******
	주 소 전남 광양시 폭포사랑길 94-30, 3동 201호 (금호동,장미아파트)	

장소	경상남도 지례리 1175-13 (인근지번 양보면 지례리 7-6,7)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9㎡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01~2018.12.31**
점용 · 사용의 유형	구거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하 동 군 수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하동군 고시 제2018-26호

옥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옥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1일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옥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목적** :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일원을 지역의 특성에 따른 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역량강화를 통하여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농업 발전거점으로 육성

3. **총사업비** : 5,541,000천원(국비3,879,000천원, 지방비1,662,000천원)

4.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옥종행복나눔센터**
- **주민정보교류센터**
- **청룡동산공원**

○ **지역역량강화(S/W)사업 부분**
- **교육, 컨설팅, H/W 운용프로그램, 운영지원, 부대비용**

5.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수탁자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장)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20년(4년간)

7. **관계도서배치**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055-880-5156), 하동군청 건설교통과(☏055-880-2548)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사업명 : 옥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세 부 사업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옥종행복나눔센터	옥종면양구리	35-10	답	842	842	하동군		
	옥종면양구리	35-11	답	842	842	하동군		
주민정보교류센터	옥종면양구리	46-5	대	497	497	하동군		
청룡동산공원	옥종면청룡리	204	대	1,008	1,008	옥종농협 협동조합	하동군옥종면청룡리 215-1	

[별지 제3호 서식]

(전 면)

(제 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서

사 업 시행자	성 명	최낙원	생년월일	601022-
	주 소	하동군 옥종면 신기동길 3-60		
개 간 장 소		시·군	읍·면	리·동
		하동	옥종	안계
개간의 용도		고구마재배		

승 인 면 적	지 번	지 목	지 적	※ 토지 대가	
	산73-1	임	4,920㎡		

지정착수시기	2018.01.08.~2019.12.31
공사비예정액	50,000천원
승 인 조 건	제18항을 부함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

2018년 2월 27 일

하 동 군 수

비 고 : ※는 소유자 개발시에는 기재 불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후 면)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토지표시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개간승인면적	토 지 대 가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당	금액	주 소	성명	
하동	옥종	안계	산73-1	임야	14,045	4,920㎡			하동군 옥종면 산기동길 3-60	최낙원	

1. 개간사업 시행승인서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2. 승인를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 당하였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서를 반납할 것.

개간사업 시행인가 조건

1.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의한 적지복구비 금78,505,900원을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본 군에 사전에 예치 하시기 바랍니다(준공검사 후 반환)
2. 인가된 사항을 입간판을 제작하여 사업장 입구에 설치하고 사업착수 하시기 바랍니다
3. 인가구역내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빨간 깃발을 10m 간격으로 설치하여 구역경계 밖을 침범하지 않토록 하여야 합니다.
4. 사업 시행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문화재 발견시에는 인가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5. 개간으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권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6. 사업시행자는 사업장내 주재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할시에는 인가를 취소 당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7. 사업계획을 변경 할 시는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사업시행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방자재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인가청이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분적인 복구지시가 있을시에는 이에 응하여여야 합니다
9. 신청지내 임목은 굴취를 하여 절.성토지 복구 및 차폐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임목을 반출코자 할시는 본 군 산림과에 신고하여 반출절차를 득하여야 합니다.
10. 산림형질변경구역내 또는 경계에서 5m이내에 묘지가 있을 경우 소유자 및 연고자의 사전 동의를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산림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여야 합니다.
11. 사업시행중 비산먼지, 소음등 주변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개별법(타법)에 관련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법에 의한 절차를 득한후 사업을 시행하여야하며 이로인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습니다.
12.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였을때는 즉시 인가증을 반납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예치 복구비로 우리군이 대행 할 수 있습니다.
13. 부득이한 사정으로 준공 기한 내 사업완료가 불가 할시에는 완료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한 연기원을 우리 군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14. 개간사업 후 산림형질변경지 적지복구는 절·성토지 및 기타 부분에 대한 복구로서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완벽하게 실시하여 주변 임지보전, 산사태 및 경관저해가 없도록 복구하여야 합니다.

15. 사업장의 기록보존을 위하여 전·중·후 사진을 동일한장소에서 촬영하여 준공 보고시 각2부씩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6. 사업시행 후 개발된 농지는 5년간 타 용도로 전용 될 수 없습니다.
17. 산지전용 협의에 따른 조건사항(붙임 산지전용 협의 공문참조)은 산지전용협의 부서와 협의하여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어구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인가청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8 - 32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2. 28.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로 754-26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2.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334-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로 754-26	2018 0228	2009 0702	동학전적지인 고성산 지남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429-1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102-90	2018 0228	2007 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산4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심방골길 83-29	2018 0228	2008 0402	심방골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3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하동군(적량면장)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14-83-00025
	주 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장소	적량면 고절리 1270(구), 인근 : 산 고절리 39(임)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2㎡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 2. . ~ 2028. 2.
점용·사용의 유형	구거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2월 28일

하 동 군 수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하동군 고시 제 2018 - 34호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2. 28.

하 동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하동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안성지구, 신촌지구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안성지구 :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827- 3번지 일원(239필지/ 97,195㎡)
 나. 신촌지구 :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456-18번지 일원(346필지/232,426㎡)
4.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 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가. 토지현황조사
  -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 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필지별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한다.
   1) 토지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에 관한 사항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3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이매화	생년월일(성별) 1960.08.05
	전화번호 010-7280-0669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00805-2******
	주 소 **경남 사천시 서포면 아포길 123**	

장소	진교면 술상리 715-18(구) 인근 : 진교면 술상리 산 62-2(임)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302㎡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 3. ~ 2023. 3.
점용·사용의 유형	구거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3월 5일

하 동 군 수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3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하동에너지 박태수	생년월일(성별) -
	전화번호 010-8511-8874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194711-0014845
	주 소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45-1, 3층**	

장소	고전면 범아리 1099-5(구) 인근 : 고전면 범아리 산-97(답)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64㎡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 3. ~ 2023. 3.
점용·사용의 유형	구거의 점용(콘크리트 포장)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3월 12일

하 동 군 수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3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고 영 석	생년월일(성별) 1954.05.04
	전화번호 010-7147-7310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540504-1******
	주 소 **하동군 옥종면 세종대실로 626-12**	

장소	옥종면 회신리 890-19(구) 인근 : 옥종면 회신리 산 13-10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38㎡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 3. ~ 2023. 3.
점용·사용의 유형	구거의 점용(기존 포장 도로)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3월 12일

하 동 군 수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3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박순종,강한수**	생년월일(성별) 1971.10.08
	전화번호 010-7147-7310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711008-1****** 680325-1******
	주 소 **하동군 옥종면 세종대실로 626-12**	

장소	악양면 입서리 949(구) 인근 : 악양면 입석리 636-2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60㎡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 3. ~ 2023. 3.
점용·사용의 유형	구거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3월 12일

하 동 군 수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4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배재현**	생년월일(성별) 1962.01.05
	전화번호 010-7147-7310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20105-1******
	주 소 **경상남도 화개면 화개로 2-15**	

장소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1340(구) 인근 : 화개면 용강리 200(답)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90㎡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 3. ~ 2023. 3.
점용·사용의 유형	구거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3월 12일

하 동 군 수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하동군 고시 제2018 - 43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3. 16.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670-97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3.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68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670-97	20180316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590, 592-1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75-14	20180316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608-7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312	20180316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426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가평길 114	20180316	20070618	가동이란 그 아름다운 음향이 이곳을 벗어나지 않는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1190-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갈성길 51-1	20180316	20080402	칠넝쿨이 무성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94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검두길 35-21	20180316	20070618	검두라는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151-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대촌길 44-11	20180316	20070618	대촌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183-1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337-8	20180316	20070618	수로왕이 칠왕자를 만나려고 왔다가 머문곳으로 범왕시를 창건하였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02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368	20180316	20070618	수로왕이 칠왕자를 만나려고 왔다가 머문곳으로 범왕시를 창건하였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03-1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109	20180316	20070618	신기마을과 궁항마을을 지나가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50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전나무길 58-5	20180316	20070618	옛날 마을에 큰전나무가 있어 붙여진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628-1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예인촌길 15	20180316	20090302	예술인의 집단 주거지인 예인촌을 도로명에 반영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3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오덕술 외20인	생년월일(성별) 54.01.06
	전화번호 010-8511-8874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540106-1*******
	주 소 **경남 진주시 평거로 9번길 15 (평거동)**	

장소
점용 : 진교면 관곡리 936-11 인근 : 진교면 관곡리 147(전)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539㎡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 3. ~ 2023. 3.)

점용·사용의 유형
구거의 점용(콘크리트 포장)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3월 20일

하 동 군 수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4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제일일피앤디 대표이사 이강완	생년월일(성별) -
	전화번호 010-4547-6650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194711-0013392
	주 소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8-2**	

장소
점용 : 하동읍 읍내리 1547-2 인근 : 하동읍 읍내리 54(답)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8㎡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 3. ~ 2023. 3.)

점용·사용의 유형
구거의 점용(콘크리트 포장)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3월 20일

하 동 군 수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 · 사용) 허가(변경) 공고

공고 제2018-47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3월 21일

하 동 군 수

<table>
<tr><td rowspan="2">시행자
(점용·사용자)</td><td>상호 및 명칭</td><td colspan="4"></td></tr>
<tr><td>대표자
(성 명)</td><td>하동군수(건설교통과)</td><td>주소</td><td colspan="2">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td></tr>
<tr><td colspan="2">소하천명</td><td colspan="4">내 원 천</td></tr>
<tr><td rowspan="5">공사(점용·사용)
개요</td><td>위치</td><td colspan="5">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 97-2</td></tr>
<tr><td rowspan="2">면적</td><td>일시점용</td><td></td><td colspan="2" rowspan="2">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td><td rowspan="2"></td></tr>
<tr><td>영구점용</td><td>406</td></tr>
<tr><td rowspan="3">기간</td><td rowspan="3">일시점용</td><td colspan="3">영구 점용</td></tr>
<tr><td colspan="2">변경 전</td><td>변경 후</td></tr>
<tr><td colspan="2"></td><td></td></tr>
<tr><td>목적 및 사유</td><td colspan="5">화개 석문교 재가설공사 따른 소하천 점용</td></tr>
</table>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8- 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현 조례의 임대료 징수기준표를 적용시 대형화·고급화 되는 농업기계 추세에 따른 임대료가 고액으로 산정되어 농가부담 가중
   ○ 임대료 징수기준표를 세분화 및 상한선 설정으로 임대용 농업기계 이용에 다른 농가부담 경감 및 이용률 제고에 기여

3. 주요 내용
   ○ 임대료 징수기준표의 산정 구간을 조정 : 제8조제2항
   - 당초 : 30,000천원 이상 : 구입가격의 0.3%
   - 개정 : 단계 세분화 및 상한가격 설정
     ‣ 30,000천원 이상 ~ 50,000천원 미만 : 100천원
     ‣ 50,000천원 이상 : 150천원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하동군(참조 : 농축산과, 전화 880-2696, FAX880-2419, e-mail : didtnal@korea.kr)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붙임 1.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기계화촉진법」”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를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여 농업기계”를 “농업기계”로, “임대자”를 “임차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임대 농업기계의 임대허가”를 “농업기계의 임차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 농업기계”를 “농업기계”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임대 농업기계”를 각각 “농업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 농업기계 임대승인”을 “농업기계 임차승인”으로, “임대료납부”를 “납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임대 농업기계”를 “농업기계”로 하며 제7항 중 “임대 농업기계 임대”를 “농업기계 임차”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임대차계약”을 “임대차 계약”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임대 농업기계의 반납)”을 “(농업기계의 반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임대 농업기계”를 각각 “농업기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임차 허가”를 “임차허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기간”을 “임차기간”으로, 같은 항 부터 제3항까지 중 “임대 농업기계”를 각각 “농업기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임대 농업기계”를 “농업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임대 농업기계”를 각각 “농업기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임대 농업기계”를 “농업기계”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임대 농업기계”를 “농업기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단위 :원/1일(8시간 기준)〕

기종명	규 격	구 입 가 격	1일 사용료	비고
전기종 및 작업기	자주식 및 부착형	100만원 미만	5,000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5,000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0,000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45,000	
		2,0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75,00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00,000	
		5천만원 이상	150,000	
적용제외 기종 및 작업기	제초기	승용자주형	60,000	
		보행자주형	30,000	
	휴립복토기	1골	30,000	
		2골	40,000	
	논두렁조성기		30,000	
	SS기		45,000	
	사다리	1조	5,000	
콩정선작업기		1포대(40kg 기준) : 1,000원		
임대농기계 운반비		전지역 40,000원/왕복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경영 개선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4. "임대료"라 함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 4. ---------- 농업기계----------.
제6조(임대차 및 교육) ① 대여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임대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	제6조(임대차 및 교육) ① 농업기계----------"임차자"----------.

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임대기준) ① (생 략)	제7조(임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대 농업기계의 임대허가는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할 수 없다.	② 농업기계의 임차허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책임자는 임대 농업기계 이상 유무를 임차인 참석하에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	④ ---------- 농업기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임대료) ① 군수는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의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 군 공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료) ① ---- 농업기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 한다.	③ 농업기계 ----------.
④ 임대료는 임대 농업기계 임대승인을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임대료납부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 농업기계 임차승인---------- 납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임대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	⑥ 농업기계----------.

다.	
⑦ 임차인이 임대 농업기계 임대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내에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회수하고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와 회수비용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⑦ ------ 농업기계 임차 ---------.
제10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한다.	제10조(임대료의 반환) ① ----------. ----------.
1. 임차인이 사용 전에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 임대 농업기계를 반납하는 경우	1. ---------- 임대차 계약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임대 농업기계의 반납) ① 임대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다음,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기계의 반납) ① 농업기계----------.
②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농업기계----------.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 허가를 받았을 경우	4 . ---------- 임차허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 임차기간 ---------- 농업기계----------.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임대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 농업기계----------.
③ 임대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농업기계----------.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임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업기계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쌀전업농 대표, 영농단체 대표,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독농가 등에서 위원장이 선임	④ ----------. <후단 삭제>

위촉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6.1.1., 개정 2017.9.29.>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 후 군수에게 조정 승인을 요청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
1.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농업기계 ----------
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
3. 그 밖에 임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3. ----- 농업기계 ----------
제18조(임대료 관리) ①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는 별도의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서 관리하되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하동군 세입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임대료 관리) ① 농업기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비치대장) ----------.
1. 임대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 농업기계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별표 1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제8조 제2항 관련)

〔단위 :원/1일(8시간 기준)〕

기 종 명	규 격	구 입 가 격	1일 사용료	비고
전기종 및 작업기	자주식 및 부착형	100만원 미만	5,000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5,000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0,000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45,000	
	"	2,0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75,000	
	"	3천만원 이상	구입가격의 0.3%적용 (천원단위절사)	
적용제외 기종 및 작업기	제초기	승용자주형	60,000	
		보행자주형	30,000	
	휴립복토기	1골	30,000	
		2골	40,000	
	논두렁조성기		30,000	
	SS기		45,000	
	사다리	1조	5,000	
콩정선작업기		1포대(40kg 기준) : 1,000원		
임대농기계 운반비		전지역 40,000원/왕복		

별표 1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제8조 제2항 관련)

〔단위 :원/1일(8시간 기준)〕

기 종 명	규 격	구 입 가 격	1일 사용료	비고
전기종 및 작업기	자주식 및 부착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00,000	
		5천만원 이상	150,000	
적용제외 기종 및 작업기	제초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휴립복토기			
	논두렁조성기			
	SS기			
	사다리			
콩정선작업기		(현행과 같음)		
임대농기계 운반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8- 호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 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가. 농촌진흥청에서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조례명의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개정
   나. 현장에서 소요되는 부품의 상한선이 없어 모든 부품 구비에 한계가 있고 현장에서 소요되는 대개의 부품은 2만원 미만으로 상한선이 없을 경우 부품 구비에 대한 현장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2만원이상 부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명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시 소요되는 농기계 수리부품 중 20,000원 이상은 2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징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무상지원

부품단가를 20,000원 이하로 제한(제7조제1항, 제2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하동군(참조 : 농축산과, 전화 880-2696, FAX880-2419, e-mail : didtnal@korea.kr)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붙임 1.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한다.

제2조 중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한다.

제3조 중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한다.

제4조 중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한다.

제5조 중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한다.

제6조 중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하고,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무상수리 부품) 농업기계 무상수리는 개당 20,000원 이하의 부품으로 하며 농업기계 점검·수리비는 무료 봉사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실습용구대장”을 “정비부품 수불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순회교육 정비부품 수불대장”을 “농업기계 순회정비일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하동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이하 "농기계순회교육반"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업기계 ---------- 농업기계----------농업기계----------.
제2조(설치) ① 농기계순회교육반은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농기계 순회교육을 위하여 교육용 정비용구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농기계순회교육 차량을 운영한다.	제2조(설치) ① 농업기계----------. ② 농업기계 ---------- 농업기계----------.
제3조(기능) ① 농기계순회교육반은 부속품대체, 정비 및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에게 농기계 자가정비기술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는 교통불편지역과 읍・면・리・마을	제3조(기능) ① 농업기계---------- 농업기계 ----------. ② 농업기계 ----------

단위로 실시한다.	--------.
③ 농번기는 농기계순회교육반을 상설 운영하고 농한기는 점검·수리정비와 직결되는 교육을 실시한다.	③ ------ 농업기계----------.
제4조(관리) 농기계순회교육반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장한다.	제4조(관리) 농업기계----------.
제5조(예산) 농기계순회교육반 운영에 드는 예산은 군비에서 지원한다.	제5조(예산) 농업기계----------.
제6조(직원) 농기계순회교육반 운영은 3명 1조로 편성 운영하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조(직원) 농업기계---------- 2명 ----------.
제7조(부품대금 징수) ① 농기계 수리 부품 중 부품 한 개당 원가가 20,000원 이하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20,000원 이상은 2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징수한다. 단, 농기계 점검·수리비는 무료 봉사한다. ② 징수한 금액은 하동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무상수리 부품) 농업기계 무상수리는 개당 20,000원 이하의 부품으로 하며 농업기계 점검·수리비는 무료 봉사한다.
제9조(각종대장) 농기계순회교육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정리한다. 1. 순회교육 실습용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제9조(각종대장) 농업기계----------. 1. ------ 정비부품 수불대장 ----------

2. 순회교육 정비부품 수불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농기계 순회정비일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순회교육 실습용구대장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구입 년월일	내구 년한	폐기 예정	비고

[별지 제2호서식]

순회교육 정비부품 수불대장

월 일	구 입			불 출		재 고	비 고
	수 량	단 가	금 액	당 일	누 계		

[별지 제3호서식]

2. 농업기계 순회정비 일지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순회교육 정비부품 수불대장

년 월일	수리기종 입고기종	부품 명	규격	이월 (개)	구입(개)		불 출(개)		수불자	확인자
					입고	재고	수불	재고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순회정비 일지

결 재	취급자	담당주사	과장	소장

교육 일시	대상 농가		수리교육 내용					비 고
	성 명	마 을 명	교육 기종	수리 부품명	수 량	단 가	금 액	

<삭 제>

하동군 공고 제2018 - 호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2월 2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사회적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하동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원활한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6조)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법을 규정(안 제7조~제14조)
○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안 제15조~제20조)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규정(안 제21조~제22조)
○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제24조)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안제2조)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하동군(참조:경제수산과, 전화 055-880-2192, FAX 055-880-2199, sonss67@korea.kr)에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 임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법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 결과물들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우선구매 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2조(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

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군수는 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해 예비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제15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수산과장, 주민행복과장, 재정관리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 기관 대표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질병 등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 ·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하동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22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발굴, 실태조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5.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 활동 지원
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참여기관 종사자 및 주민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행 지원
8.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9. 사회적경제 동향분석 및 정책조사 연구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23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지원금 교부 등) 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재정지원 및 시설비 등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

하동군 공고 제 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2. 제안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위임사항을 반영,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등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를 “하동군 계획 조례”로 제명 변경

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안 제17조의 2)

- 도로(「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경계로부터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경계로부터 가시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관광진흥법 제52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 등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서 우량농지로 보존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과 만조 시 해안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토지분할 허가 기준 신설(안 제21조 2항)

-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 할 수 없다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하동군(참조 : 도시건축과, 전화 880-2142, FAX 880-2109, e-mail kilpo20@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 임 1.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를 “하동군 계획 조례”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도로(「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경계로부터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가시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과 만조 시 해안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차폐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제1분과)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하동군 계획 조례
<신 설>	제17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도로(「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경계로부터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가시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

	하지 않을 것 5.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과 만조시 해안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차폐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제1분과)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생 략)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

	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관 련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생략)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 (2) "생 략"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나.(토지의 형질변경) ~ 다. (토석채취) "생 략"	
라. 토지분할	(1)(가) ~(다) "생 략"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3) "생 략"

하동군 공고 제 2018-305호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하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하수 조례

2. 제안 이유

❍ 현행 『하동군 지하수 조례』 제21조(과태료의 강제징수)에 과태료 체납처분을 위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상 근거가 있어야 하나 조례에 근거 없이 정하고 있어 조항 삭제

❍ 『지하수법』 제41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을 하므로 조례에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

3. 주요 내용

❍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안 제17조)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안 제18조)

❍ 제19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삭제(안 제19조)

❍ 제20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삭제(안 제20조)

❍ 제21조(과태료의 강제징수) 삭제(안 제21조)

❍ 제23조(준용규정) 삭제(안 제23조)

4. 의견 제출 :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4월 5일까지 하동군(참조 : 건설교통과, 전화 880-2502~05, FAX 880-2509, e-mail kyk63@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 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19조제1항의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의	<삭 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19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과태료처분에	<삭 제>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7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삭 제>
제2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삭 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18- 호

하동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하동군 법무행정처리 규정」제7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임명,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선발, 업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6조)
다.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6조)
라. 세무조사 연기 및 기간연장(안 제17조 ~ 안 제18조)
마.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안 제23조)
바. 납세자권리헌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안 제28조)

4. 제 정 조 례 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별지서식으로에 따라 전화·우편·FAX 등 제출
- 하동군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공고고시’에 전문 게시
다. 제출기관 : 하동군수(재정관리과)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전화 : 055-880-2272~3 / FAX 055-880-227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행정 진행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납세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군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
2.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등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 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등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 · 제출 요구 및 질문 · 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7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말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 · 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분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군수가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군수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번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이전에 신청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이전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5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6조(안건심의) 고충민원은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7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

여야한다.

② 납세자 등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 연기신청) ① 납세자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하며, 연기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납세자가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 · 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1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 · 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 고충민원 · 불복청구 ·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 환급 ·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 · 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 · 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2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3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24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제25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8- 호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하동군 법무행정처리 규정」제7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서식 등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의 신청,처리절차, 결과 통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안 제10조)
나. 세무조사 연기 및 기간연장(안 제11조 ~ 안 제15조)
다.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21조)
라. 각종 대장 및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45호 서식)

4. 제 정 규 칙 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별지서식으로에 따라 전화·우편·FAX 등 제출
- 하동군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공고고시’에 전문 게시
다. 제출기관 : 하동군수(재정관리과)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전화 : 055-880-2272～3 / FAX 055-880-227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고충민원

제4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처리결과(의견)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열람·제출요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세무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및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통보)서(별지 제7호서식)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충민원결과통지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1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사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

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연장통보서(별지 제14호서식)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사기간연장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제14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5조(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4조에 따른 조사연기신청결과통보서(별지 제19호서식)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사연기신청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제4장 권리보호 요청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①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통지(통보)서(별지 제24호서식)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세무부서

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회보서(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

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조사 착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

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5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22조(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7호서 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가산세의 감면) ①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징수유예 등) 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지방세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

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민 원 내 용	처 리 여 부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결과	결과통지일	처리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 . .	처리예정기한	. . .
기한연장사유				

끝.

하 동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까지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고충내용				

붙임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하 동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 약)				
00과 의 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고충민원서류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 ·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충내용				
요구자료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하 동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붙임: 고충민원의결서)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붙임 의결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하 동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리결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하 동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하 동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하 동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처리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접수사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하 동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하 동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요 청 사 유	처 리 여 부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 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기간연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하 동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하 동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하 동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하 동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하 동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 사 사 유			
	4 기 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5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니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 사 반			조 사 유 형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5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니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 사 반			조 사 유 형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2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지방세의 내용

주요세목	과세물건(대상)	납부기한	세액	신청금액
연장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4호서식]

하 동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 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5호서식]

하 동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 견	승인 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 사유				
	분납기한 및 금액	횟수	주요세목	분납기한	분납금액
		1회			
		2회			
		3회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J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6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 )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지방세 (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통지내역	기한연장 대상			
	당초기한			
	승인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7호서식]

하 동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 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접수 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사유 발생일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월	세 년 월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하 동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 의견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할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승인 여부)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하 동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처리 결과 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승인에 따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처리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 ] 징수유예등
[ ]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 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붙임 신청서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하 동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 ] 징수유예등 [ ]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여부 의견				
승인(기각)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하 동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 ] 징수유예등 / [ ] 체납처분유예 결정 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일		승인여부		
유예 승인(기각) 사유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이 결정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과세년월	세목	세액
		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하 동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처리 결과 통보**

「하동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승인에 따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처리된 세목과 세액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하동군 공고 제2018 - 호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2.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 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2호, '17.12.29)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중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와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3조)

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법규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6조)

다. 세출예산지출종합계획수립 기능을 통합지출관에 이관함.(안 제47조)

라. 채권 확보를 위한 독촉절차를 정비함.(안 제151조, 제152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하동군(참조 : 재정관리과, 전화 880-2282~3, FAX 880-2279, e-mail)에게 **【별지 서식】**에 따

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단서 중 “없다”를 “없으나,「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반환”을 “환급”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및「하동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재정관리과장은”은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 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로, “통합지출관,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을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정관리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51조제3호 단서 중 “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15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③ (생 략)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하동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없으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및「하동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8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환급----------「지방세 기본법」----------. ② 사용료,수수료, 부담금,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생 략) ② 재정관리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계획서와 기획조정실장이 통지하는 세출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 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

현 행	개 정 안
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정관리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③ 통합지출관----------.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본문 생략) 1.~ 2. (생 략) 3. (본문 생략)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 략)	**제157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본문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본문 현행과 같음) --, 「지방세징수법」----------. 4. (현행과 같음)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급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2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하동군 공고 제2018- 호

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하동군 법무행정처리 규정」제7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 공포, 2018. 1. 1. 시행)에 따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정함(안 제17조)

- (현행) 조사개시 10일 전
- (개정안) 조사개시 15일 전

4. 일부개정 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1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별지서식에 따라 전화·우편·FAX 등 제출

- 하동군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공고고시’에 전문 게시

다. 제출기관 : 하동군수(재정관리과)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전화 : 055-880-2272～3 / FAX 055-880-227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10일 전에”를 “15일 전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항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 15일 전에 ----------. ② ~ ④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18 -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주민참여 대상공사에 공원공사를 추가함. (안 제12조)

나. 주민참여 대상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함. (안 제12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하동군(참조 : 재정관리과, 전화 880-2282~3, FAX 880-2279, e-mail)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공원공사.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12조(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 9.(생 략)
<신 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td><td>12조(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1. ~ 9.(현행과 같음)
10. 공원공사
11. ----------</td></tr>
<tr><td>【별표1】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상한금액(제12조 관련)
<table><tr><th>구 분</th><th>금 액</th><th>비 고</th></tr><tr><td>일반건설공사</td><td>총공사비 3억원 미만</td><td rowspan="2">「하동군 대형공사 주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 미만금액</td></tr><tr><td>전문공사(전기. 소방포함)</td><td>총공사비 2억원 미만</td></tr></table></td><td><삭 제></td></tr>
</table>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제 2018-9호

2018년도 영산강·섬진강 환경지킴이 채용공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수질보전의식 고취 및 수질 보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산강 · 섬진강 환경지킴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2월 9일

영 산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채용개요

□ **채용직종** : 기간제근로자(환경지킴이)

□ **채용기간** : ‘18. 3. 20 ~ ‘18. 12. 31(예정)

* 인건비 등 예산사정 또는 채용일정에 따라 채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채용인원** : 37명

- 활동 세부구간별 채용인원

권 역	구간명	채용 인원	활동 세부구간 (행정구역명)
영산강 권역	1구간	1	전남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석현교-대곡교-금월교-향교교-양각교-옥산교-월계교-장천교, 39km)
	2구간	1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대추교-유산교-삼지교-풍수교-중옥교, 36.7km)
	3구간	1	광주 북구 월출동~광주광역시 북구 지야동 (중옥교-용산교-월출교-용두교-첨단대교-광신대교, 31.6km)
	4구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호동~광주광역시 광산구 남산동 (송산유원지-용진교-임정교-봉덕교, 35.5km)
	5구간	1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전남 장성군 황룡면 옥정리 (봉덕교-제2황룡교-장성대교-부흥교-서삼초교앞교량, 36.3km)
	6구간	1	광주 서구 치평동~광주 동구 용산동 (상무대교-유촌교-광암교-양동교-중앙대교-설월교-용산교, 17.8km)
영산강	7구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하남산단하남교+성덕교-하남교-운남교-극락교-서창교, 26.1km)

권 역	구간명	채용 인원	활동 세부구간 (행정구역명)
권역	8구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평동대교-장록교-송정1교-호가정-승촌보-지석대교, 31.4km)
	9구간	1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지석대교-덕례교-중앙교-지석교-오계교-죽청대교, 60.5km)
	10구간	1	전남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전남 화순군 능주면 천덕리 (벽라교-죽청대교-능주교-한천교-도산교-용두교, 27.3km)
	11구간	1	전남 나주시 석현동~전남 나주시 운곡동 (나주대교-노황교-영산교-운곡교-천연염색문화관다리, 28.1km)
	12구간	1	전남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전남 나주시 오량동 (구진포나루터-회진교-한내교-죽산보-석관정나루터, 17.8km)
	13구간	1	전남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전남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나주영상테마파크-덕음선착장-동강대교-느러지전망대, 23.6km)
	14구간	1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전남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석관정-경로당앞다리-고막교-옥동교-나산교, 26.3km)
	15구간	1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전남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동강교-곡창교-학야교-함평교-화동교, 23.9km)
	16구간	1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대래교-식영정-느러지-몽탄대교-복용교, 25.2km)
	17구간	1	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복용교-의산3리경로당앞다리-구정리샛강말단-무영대교, 18.3km)
	18구간	1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무영대교-남창대교-황포돛배선착장-삼향교-삼호대교-나불도선착장-수로교, 22.1km)
	19구간	1	전남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전남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수로교-월창교-성재마을선착장-신금대교, 47.3km)
	20구간	1	전남 나주시 동강면 진천리~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신금대교-삼포천말단-장동마을앞교량-마한문화공원-신흥교-공산교, 44.7km)
섬진강 권역	21구간	1	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연장교-수선루진입교-좌포교-반용교, 12km)
	22구간	1	전북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 전북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수선루진입교-마령교-윤동교, 12.2km)
	23구간	1	전북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 전북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반용교-포동교-주천제2교-제2오원교-창인교-호원교-덕암교, 19.3km)
	24구간	1	전북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 전북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 (수곡산장앞다리-강진교-갈담제2교-물우교-일중교-천담교-현수교+내월교, 34km)
	25구간	1	전북 순창군 동계면 수장리 ~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 (유촌대교-괴정교-구남교-창주교-현포교-수정교-산수교, 25.8km)
	26구간	1	전북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 전북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유촌대교-오교마을합류다리-유풍교-상촌교-시정1교-대풍교-향가목교, 14.5km)
	27구간	1	전남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 전남 곡성군 겸면 평장리 (향가목교-합강교-신수교-영귀교-평장교-송강교, 20.2km)
	28구간	1	전북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 전북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합강교-금호타이어-청계동교-금곡교-금송교-제천마을교량, 39.6km)
	29구간	1	전북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 전북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 (제천마을교-승사교-남원대교-이백교-요천교-산동교, 49.5km)
	30구간	1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 전남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권 역	구간명	채용 인원	활동 세부구간 (행정구역명)
			(금곡교-고달교-이화교-금천교-사곡교, 27.7km)
	31구간	1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사곡교-압록교-태안교-목사동1교, 16.2km)
	32구간	1	**전남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 전남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압록교-구례교-용문교-황학교-괴목2교-선변교-각문교, 12.8km)
	33구간	1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 전남 구례군 광의면 지천리** (구례교-문척교-서시교-서시2교-광용교-옥지교, 16.4km)
	34구간	1	**전남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 ~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옥지교-월금교-간문교-간전교-한수교-연곡교-남도대교, 16.5km)
	35구간	1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남도대교-하천교-금천교-송정공원-매화마을, 25.3km)
	36구간	1	**경남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악양교-섬진교-횡천교-청해소재제2공장, 17.3km)
	37구간	1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청해소재제2공장-진월교-태인대교-섬진대교-주교천교, 27.9km)

* 채용원서 접수시 활동구간 행정구역명을 참조하여 지원구간에 필히 기재하며, 위 순찰구간은 실제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보수)** 일급 60,240원/일 및 국내여비 13,000원/일(실근무 기준)

* 임금가산율(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은 없음

□ **(근무조건)** 주5일, 8시간/일(평일 1일 및 주말 1일 휴무)

□ **(휴무)** 유급휴무 및 무급휴무

○ 유급휴무 : 5일 근무시 1일, 공휴일(일요일제외) 및 근로자의 날

○ 무급휴무 : 5일 근무시 1일

□ **(복무관리)** :「Mobile 복무관리 시스템」으로 근무실태 관리

□ **(담당업무)** : 하천순찰, 계도활동, 기타 수계보전을 위해 환경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자세한 사항 붙임4 참조)

3 채용기준

□ **응시자격**('18. 2. 22일까지 모두 만족한 자)

○ **수계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

- 지원하고자 하는 **활동구간의 지자체** 또는 **인근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주민등록등본상)

○ **타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자영업자 제외(채용 후 자영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채용 취소)
- 농업에 종사하여 중복취업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일 8시간 범위 내에서 평일과 주말 근무가 가능한 경우 채용
- 4대보험 미 가입자

○ **Mobile 복무관리시스 을 통한 출·퇴근 여부 및 위치확인 등의 복무관리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자**

□ **참여제한**(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자(중복지원 제외)**

○ **최근 3년 기준,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반복참여한 자**

- **(예외) ① 만 65세 이상**(2018.2.21.일 기준) **② 중증장애인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능력, 질병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복채용 가능**(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채용신청서와 같이 제출)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 180일 초과한 경우 1년으로 간주
※ 2년이상 반복참여한 경우 1년 참여제한(단, 참여제한기간 동안에도 '적극적 구직활동'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이동하려는 노력 확인되어야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단,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최근 실업급여 수급일로 부터 90일이 경과했을 때 참여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한 자**

- 단,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한 자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60% 범위	-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이 있는 자**

- 단,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공

증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 후 3차 공고시에는 반복참여자, 고소득 및 고액재산가에 대하여 **선발 총점의 각 20% 감점**하여 **선발과정 진행**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감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관련규정 참조

□ 우대사항

○ 취업취약계층(붙임 3참조), 장년층(만 55세 이상자), 여성

○ 운전면허증 보유 및 자기차량 소유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가점(5~10%)부여 대상자

4 채용일정

□ 접수기간 : `18. 2. 9 ~ `18. 2. 22(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 방문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 · 접수분에 한함)

- **(접수처)**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우 61945)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문의전화 : 062-410-5384)

※ 방문접수의 경우 점심시간(오후12~1시) 및 주말(토 · 일요일) ·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 **온라인 지원**(일모아시스템, 워크넷 접속 후 온라인 지원 클릭)

□ 제출서류

○ 채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서명), 자기소개서 각1부.

- 영산강유역환경청 또는 일모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기본증명서* 각 1부

* 기본증명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가능(인터넷 민원24에서도 발급가능)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서류합격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에는 응시자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부착 (건강진단서 불인정)

○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및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본인명의의 차량이 아닐 경우, 운전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보험증명서 등)
- 취업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붙임3 참조)
  * 일모아시스템상에서 확인 불가능(취업취약계층⑥~⑫)한 증빙서류 제출
- 국가유공자 혹은 그 배우자,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
- 채무관련 공증서류 및 입증자료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및 구직활동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심사(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 18. 3. 6.

※ 적격자가 3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2차 면접심사 병행 실시

※ 1차 심사 합격자 및 2차 면접심사 일시·장소는 개별 유선 통보

○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18. 3. 14.

○ 최종 합격자 발표 : ’ 18. 3. 15.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 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me.go.kr/ysg) 또는 개별통보 예정

5 기타사항

○ 참여제한에 대한 사실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 (ilmoa.go.kr) 등에서 확인

○ 제출서류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계약 후 신원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해지할 수 있음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접수완료일(‘18.2.22)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모두 불인정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62-410-5384)로 문의

붙임 1. 채용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취업취약계층 범주,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1부.
4. 환경지킴이 주요임무 1부. 끝.

【붙임 1】

직접일자리사업(5대강 환경지킴이) 참여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	
지원구간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실시간 위치확인 동의 여부(○, ×)		농업종사여부 (○, ×)	
우대사항 대상여부 (해당사항 모두 √ 표기)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여성가장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만55세 이상자 □여성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여 부	□ 취업 □ 실업 □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20 . .		
차량보유 여부		보유( ), 미보유( )	구직등록 여부	등록 ( ), 미등록 ( )
운전면허증 소지여부		소지( ), 미소지(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 사업명	①	②	③
	참여 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1 본 신청서는 환경지킴이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u>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환경지킴이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u>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18 년 월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직접일자리사업(5대강 환경지킴이) 참여신청서*(예시용)*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8. 1. 9.)	
지원구간	1구간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1955년 12월 31일
주 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유역아파트 0동 0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061-000-0000 (010-xxxx-xxxx)
이메일주소	abcd@naver.com		
실시간 위치확인 동의 여부(○, ×)	○	농업종사여부 (○, ×)	X
우대사항 대상여부 (해당사항 모두 √ 표기)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여성가장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만55세 이상자 □여성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1 명	
취 업 여 부	☑ 취업 □ 실업 □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16.1.1.~2018.2.7			
차량보유 여부	보유(○), 미보유( )	구직등록 여부	등록 ( ), 미등록 (○)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소지(○), 미소지(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 사업명	① 환경지킴이	② 숲가꾸기	③
	참 여 기 간	2015.01.01. ~2015.12.31	2016. 05 .01.~2016 12.31.	20 . . .~20 . .

1 본 신청서는 환경지킴이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환경지킴이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2.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홍길동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홍길동
김oo	*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김oo*
홍ㅇㅇ	*자녀*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홍ㅇㅇ*
	.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18 년 *1 월 9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붙임2]

자 기 소 개 서
(활동계획서)

성 명 :

생년월일 : . . (만 세)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업무수행 자세, 유사경력, 활동실적, 자신이 환경지킴이로 채용되었을 경우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활동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소개서 작성 시 간접적으로 학력(학교명 포함),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자기소개서에 사진 부착 금지*

2018년 월 일

작 성 자 : ○○○ (서명)

【붙임 3】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신청자의 취약계층 해당여부는 사업수행기관이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

<table>
<tr><th>구 분</th><th>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th></tr>
<tr><td rowspan="2">저소득층</td><td>● 2018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액 한도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 한도
<table>
<tr><th rowspan="2">가구원 수</th><th rowspan="2">소득기준</th><th colspan="3">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th><th rowspan="2">노인 장기요양 보험료</th></tr>
<tr><th>직장가입자</th><th>지역가입자</th><th>혼합</th></tr>
<tr><td rowspan="2">1인</td><td rowspan="2">1,672,000</td><td>52,565</td><td>26,652</td><td>53,034</td><td>×</td></tr>
<tr><td>56,444</td><td>28,617</td><td>56,948</td><td>○</td></tr>
</table>
- 2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 한도
<table>
<tr><th rowspan="2">가구원 수</th><th rowspan="2">소득기준</th><th colspan="3">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th><th rowspan="2">노인 장기요양 보험료</th></tr>
<tr><th>직장가입자</th><th>지역가입자</th><th>혼합</th></tr>
<tr><td rowspan="2">2인</td><td rowspan="2">1,708,000</td><td>53,474</td><td>27,773</td><td>54,093</td><td>×</td></tr>
<tr><td>57,420</td><td>29,823</td><td>58,085</td><td>○</td></tr>
<tr><td rowspan="2">3인</td><td rowspan="2">2,210,000</td><td>69,711</td><td>56,874</td><td>70,459</td><td>×</td></tr>
<tr><td>74,856</td><td>61,071</td><td>75,659</td><td>○</td></tr>
<tr><td rowspan="2">4인</td><td rowspan="2">2,712,000</td><td>84,887</td><td>85,412</td><td>85,881</td><td>×</td></tr>
<tr><td>91,152</td><td>91,715</td><td>92,219</td><td>○</td></tr>
<tr><td rowspan="2">5인</td><td rowspan="2">3,213,000</td><td>100,955</td><td>108,657</td><td>102,190</td><td>×</td></tr>
<tr><td>108,405</td><td>116,676</td><td>109,732</td><td>○</td></tr>
<tr><td rowspan="2">6인</td><td rowspan="2">3,715,000</td><td>116,936</td><td>131,825</td><td>118,354</td><td>×</td></tr>
<tr><td>125,566</td><td>141,554</td><td>127,089</td><td>○</td></tr>
<tr><td rowspan="2">7인</td><td rowspan="2">4,216,000</td><td>131,976</td><td>150,960</td><td>133,811</td><td>×</td></tr>
<tr><td>141,716</td><td>162,101</td><td>143,686</td><td>○</td></tr>
<tr><td rowspan="2">8인</td><td rowspan="2">4,718,000</td><td>147,490</td><td>167,711</td><td>149,745</td><td>×</td></tr>
<tr><td>158,375</td><td>180,088</td><td>160,796</td><td>○</td></tr>
<tr><td rowspan="2">9인</td><td rowspan="2">5,220,000</td><td>163,172</td><td>184,310</td><td>165,762</td><td>×</td></tr>
<tr><td>175,214</td><td>197,912</td><td>177,995</td><td>○</td></tr>
<tr><td rowspan="2">10인</td><td rowspan="2">5,721,000</td><td>179,545</td><td>200,975</td><td>182,496</td><td>×</td></tr>
<tr><td>192,795</td><td>215,807</td><td>195,964</td><td>○</td></tr>
</table></td></tr>
<tr><td>장애인</td><td>●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td></tr>
<tr><td>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td><td>●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 만20세~만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td></tr>
<tr><td>결혼이민자</td><td>●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td></tr>
<tr><td>북한이탈주민</td><td>●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th></tr>
<tr><td>위기 청소년</td><td>●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td></tr>
<tr><td>여성가장</td><td>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첨 부 서 류</th></tr>
<tr><td>배우자 無</td><td colspan="2">●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td></tr>
<tr><td rowspan="9">배우자 有</td><td>가출・행방불명</td><td>실종신고서</td></tr>
<tr><td>장애</td><td>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td></tr>
<tr><td>질병</td><td>의사의 진단서</td></tr>
<tr><td>군복무</td><td>복무확인서</td></tr>
<tr><td>학교 재학</td><td>재학증명서</td></tr>
<tr><td>교도소 입소</td><td>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td></tr>
<tr><td>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td><td>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td></tr>
<tr><td>이혼소송 제기</td><td>이혼소송확인서</td></tr>
<tr><td>기타 가족 생계 부양</td><td>통・반장의 확인서(검토)</td></tr>
</table>
</td></tr>
<tr><td>성매매피해자</td><td>●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td></tr>
<tr><td>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td><td>●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td></tr>
<tr><td>갱생보호 대상자</td><td>●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td></tr>
<tr><td>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td><td>●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td></tr>
<tr><td>노숙인</td><td>●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td></tr>
</table>

【붙임 4】

환경지킴이 주요 임무

역 할	세부 활동내용
환경오염행위 신고·감시·계도	○ 순찰구간 수질오염 상황 발생시 신고 및 상황전파 ○ 불법 낚시행위 신고·계도 및 낚시꾼 쓰레기 투기행위 감시 ○ 하천에서의 차량 세차행위 신고·계도 등
환경정화 활동	○ 하천변 쓰레기 수거 활동 ○ 장마 후 지자체의 하천변 쓰레기 수거 협조 등
현황조사	○ 하천변 불법경작지 현황조사 ○ 하천변 퇴비 보관실태 조사 ·계도 등
기타	○ 기타 해당 수계 보전을 위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하동군 공고 제2018-156호

2018년도 하동군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사업 공모

하동군에서는 2017년도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 대상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21일

하 동 군 수

1.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사업 개요

- ❑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대수** : 3 대
- ❑ **접수기간** : 2018. 2. 26.(월) 9:00 ~ 보급 물량 소진 시까지
- ❑ **보급차종** : 전기 이륜차 7종 (붙임 1 참조)
  -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18년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만원)

판매사	㈜에코카	씨엠파트너		그린모빌리티		㈜시엔케이	㈜한중모터스
차량명	루체	썬바이크	문바이크	발렌시아	Motz Truck	DUO	Z3

2.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 구입비 보조 기준 : 보급대수 제한 없음

- 기존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의 추가 구매 가능

❑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 최대 350만원(유형에 따라 정액지원)

구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규모별	경형	소형	중・대형	경형~대형
보조금(만원)		230~250*	250~270*	350	350

※ 일반형 경형, 소형은 이륜차 폐지 후 구매 시 추가보조금(20만원) 지급

※ 폐지 여부는 사용 폐지 증명서(필수)를 기본으로 하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 사진 등)로 보완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을 따름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것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최고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것

3.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

❑ 신청대상

▪ 2018년도 하동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사업 신청일 전일까지

① 하동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시험자격 최소연령) 이상 **군민**

② 하동군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③ 하동군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제외)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등기부등본(지사, 대리점, 공장 등)을 통한 소재지 확인

❑ 신청자격 (필수조건)

①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업체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매계약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③ 하동군 차량등록 사업소에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하동군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차량 등록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용본거지(차고지)로 등록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 관내 주소가 아닐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서류

① **개 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동일 세대원 공동명의 등록 시),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

②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

※ 전기차 판매점 : (보조금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

-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통보
- 신청서가 지원대수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추첨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전기 이륜차 제작·판매업체는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하동군청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사업 담당자 이메일(myday8@korea.kr)로 발송하여 담당자 이메일 수신 순으로 신청접수 순번 부여, 이후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 사유가 없을 시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

신청서 접수 및 구매 계약 체결	신청자 → 이륜차 제조·판매사
⇩	
신청 서류 제출	이륜차 제조·판매사 → 하동군
⇩	
구매 지원 대상자 결정·통보	하동군 → 신청자, 이륜차 제조·판매사
⇩	
차량 출고 및 수령	이륜차 제조·판매사 → 신청자
⇩	
차량 등록	신청자 → 하동군청 자동차 등록계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이륜차 제조·판매사 → 하동군
⇩	
보조금 지급	하동군 → 이륜차 제조·판매사

4. 특이사항

- ❑ 신청서류 접수 후 다른 차종으로 변경할 경우, 신규로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 전기이륜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이륜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필참)

  ※ 동일 세대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 관내가 아닐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하여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의 세대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는 불가합니다.
- ❑ 전기차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합니다.
-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하동군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합니다.
- ❑ 이륜차 사용신고는 하동군에서만 진행하여야합니다.

붙 임 1.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2. 전기 이륜차 구매 신청서

[붙 임 1]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제작사		씨엠파트너		그린모빌리티		㈜에코카	㈜시엔케이	㈜한중모터스
차량명		썬바이크	문바이크	발렌시아	Motz Truck	루체	DUO	Z3
차종		이륜	이륜	이륜	삼륜	이륜	이륜	이륜
최고속도	상온	59.1km/h	69.5km/h	57.5km/h	38.9km/h	58.4km/h	62.1km/h	60.2km/h
	저온	51km/h	67.3km/h	56.2km/h	30.1km/h	51.6km/h	66.0km/h	56.9km/h
주행거리	상온	41.7km	80.7km	46.5km	40.3km	47.3km	48.6km	45.6km
	저온	31.1km	67.8km	38.7km	30.5km	34.5km	37.6km	37.6km
충전시간		3시간 37분	3시간 58분	3시간 23분	5시간 58분	3시간58분	3시간 40분	3시간 44분
배터리		리튬인산철 (1.58kWh)	리튬인산철 (4.56kWh)	리튬이온 (2.16kWh)	리튬이온 (3.89kWh)	리튬이온 (1.92kWh)	리튬이온 (2.5kWh)	리튬이온 (1.56kWh)
충전방식		배터리교환형	배터리교환형	플러그인	플러그인	플러그인	배터리교환형	플러그인
최고출력		3kW	5.5kW	3.8kW	3.9kW	3.2kW	3.6kW	3.5kW
공차무게		85kg	130kg	105kg	210kg	105kg	105kg	85kg
제원	길이	1,875mm	1,850mm	1,750mm	2,485㎜	1,810㎜	1,890㎜	1,800㎜
	너비	755mm	735mm	740mm	1,210㎜	650㎜	670㎜	740㎜
	높이	1,070mm	1,080mm	1,275mm	1,275㎜	1,170㎜	1,155㎜	1,100㎜
가격		390만원	600만원 (예정)	390만원	682만원	409만원	380만원	385만원
판매점 연락처		1544-1751		1588-8228		02-784-7119	054-977-0204	02-6954-3493

※ 2018. 1월 기준 대상이며, 가격은 제조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2]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성 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이륜자동차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동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하동군 공고 제2018-168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등록 및 폐기 공인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인 사용 및 폐기일 : 2018. 2. 22.
2. 신조 및 폐기사유 :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위한 공인 개설 및 하동군 투자 유치 진흥기금 폐지로 인한 공인폐기
3. 신조·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신조	폐기
신조 공인	하동군 주민행복과 자활기금 운영특별 회계출납원	한글전서체 1.8㎝ 정사각형		
폐기 공인	하동군투자 유치진흥기 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 정사각형		

4. 신조 공인 사용일 :2018. 2. 22.(공고 후)

2018년 2월 일

하 동 군 수

2018년 하동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하 동 군

2018년 하동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 우리군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07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9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849억원)보다 1,221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9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51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70억원입니다.

◈ 우리군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개편전)는 17.3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개편전)는 65.82%입니다.

◈ 우리군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8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은 재정자립도가 동종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고 의존재원 확보 등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재정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소미정(880-2023)

홈페이지 재정공시 주소 : http://www.hadong.go.kr/sub/08_06_02.asp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하동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070	4,279	791	3,849	3,441	408
	세출예산	5,070	4,279	791	3,849	3,441	408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7.38	14.96	2.42	15.58	15.51	0.07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5.82	62.00	3.82	66.45	64.68	1.77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58	32	26	12	24	△12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표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전북 전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포항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시-(2) 21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김포시 충북 충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시	경기 시흥시 경기 안성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시 전북 익산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전남 여수시 경남 거제시
	시-(3) 19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포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목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충남 보령시 경북 김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경북 안동시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충남 논산시 경북 경산시	경기 구리시 강원 삼척시 충남 당진시
	시-(4) 20개 단체	경기 의왕시 강원 속초시 전북 김제시 경북 상주시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	경기 과천시 충남 계룡시 전남 광양시 경남 통영시	강원 동해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주시 경남 사천시	강원 태백시 전북 남원시 경북 영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경기 양평군 충남 예산군 전남 장흥군 경남 거창군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해남군	인천 강화군 충북 음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무안군	인천 옹진군 충남 부여군 전북 부안군 경북 칠곡군	울산 울주군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함안군
	군-(2) 20개 단체	경기 가평군 충북 진천군 전남 담양군 경북 의성군	경기 연천군 충북 괴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울진군	강원 평창군 충남 금산군 전남 영암군 경남 창녕군	강원 정선군 충남 서천군 전남 완도군 경남 고성군	충북 영동군 충남 태안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합천군
	군-(3) 20개 단체	강원 횡성군 강원 고성군 전북 임실군 경북 청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양양군 전북 순창군 경북 성주군	강원 철원군 충북 보은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예천군	강원 양구군 충북 옥천군 전남 영광군 경남 하동군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 전남 장성군 경남 함양군
	군-(4) 21개 단체	강원 화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진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산청군	충북 단양군 전남 곡성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충남 청양군 전남 구례군 경북 청송군 경북 울릉군	전북 진안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양군 경남 의령군	전북 무주군 전남 함평군 경북 영덕군 경남 남해군
자치구	구-(1) 13개 단체	서울 중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북구 서울 양천구 서울 송파구	서울 도봉구 서울 강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구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초구
	구-(2)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관악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동구 서울 금천구	서울 광진구 서울 영등포구
	구-(3) 22개 단체	부산 진구 부산 사상구 인천 중구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동구 인천 남구 광주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서구
	구-(4)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남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동구	부산 서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울산 북구	부산 동구 부산 연제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부산 영도구 부산 수영구 인천 계양구 대전 대덕구	부산 동래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

※ 2017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

년도 하동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6,983	415,594	0	75,035	16,3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42,438	362,228	397,256	427,877	506,98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8,932	100%	320,671	100%	346,122	100%	385,119	100%	415,594	100%
지 방 세	13,980	4.53%	14,975	4.67%	16,849	4.87%	18,670	4.85%	19,670	4.73%
세외수입	9,602	3.11%	8,237	2.57%	10,390	3.00%	11,134	2.89%	12,133	2.92%
지방교부세	144,991	46.93%	150,690	46.99%	150,620	43.52%	161,840	42.02%	182,000	43.79%
조정교부금 등	11,000	3.56%	12,000	3.74%	16,500	4.77%	19,300	5.01%	19,300	4.64%
보 조 금	110,358	35.72%	115,665	36.07%	129,142	37.31%	146,349	38.00%	142,065	34.18%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000	6.15%	19,104	5.96%	22,621	6.54%	27,826	7.23%	40,426	9.7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6,983	415,594	0	75,035	16,3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42,438	362,228	397,256	427,877	506,98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8,932	100%	320,671	100%	346,122	100%	385,119	100%	415,594	100%
일반공공행정	17,256	5.59%	17,914	5.59%	17,921	5.18%	18,392	4.78%	18,801	4.52%
공공질서 및 안전	5,103	1.65%	6,411	2.00%	9,164	2.65%	13,936	3.62%	12,200	2.94%
교 육	3,190	1.03%	3,888	1.21%	4,391	1.27%	4,141	1.08%	3,804	0.92%
문화 및 관광	24,317	7.87%	26,208	8.17%	28,722	8.30%	31,018	8.05%	24,112	5.80%
환 경 보 호	13,797	4.47%	13,910	4.34%	19,787	5.72%	32,369	8.40%	29,265	7.04%
사 회 복 지	60,584	19.61%	69,268	21.60%	70,027	20.23%	74,429	19.33%	78,451	18.88%
보 건	6,315	2.04%	7,356	2.29%	7,027	2.03%	7,021	1.82%	11,012	2.65%
농림해양수산	67,252	21.77%	68,537	21.37%	71,762	20.73%	88,415	22.96%	91,731	22.07%
산업·중소기업	36,955	11.96%	15,336	4.78%	16,424	4.75%	15,204	3.95%	49,823	11.99%
수송 및 교통	12,278	3.97%	10,000	3.12%	13,942	4.03%	11,170	2.90%	15,776	3.80%
국토 및 지역개발	14,389	4.66%	27,457	8.56%	26,370	7.62%	31,523	8.19%	26,009	6.26%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321	0.08%
예 비 비	3,100	1.00%	6,030	1.88%	11,100	3.21%	6,629	1.72%	2,938	0.71%
기 타	44,397	14.37%	48,355	15.08%	49,487	14.30%	50,872	13.21%	51,350	12.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30,835**	**510,403**	**79,568**	**18.47**
하동군	427,877	506,983	79,106	18.49
출자·출연기관	2,958	3,420	462	15.6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재)녹차연구소, (재)장학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개편전 기준)는 17.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38 (7.65)	415,594 (415,594)	72,229 (31,803)	343,365 (343,365)	0	0 (40,426)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3.78 (7.63)	13.20 (7.24)	14.41 (7.87)	14.96 (7.74)	17.38 (7.6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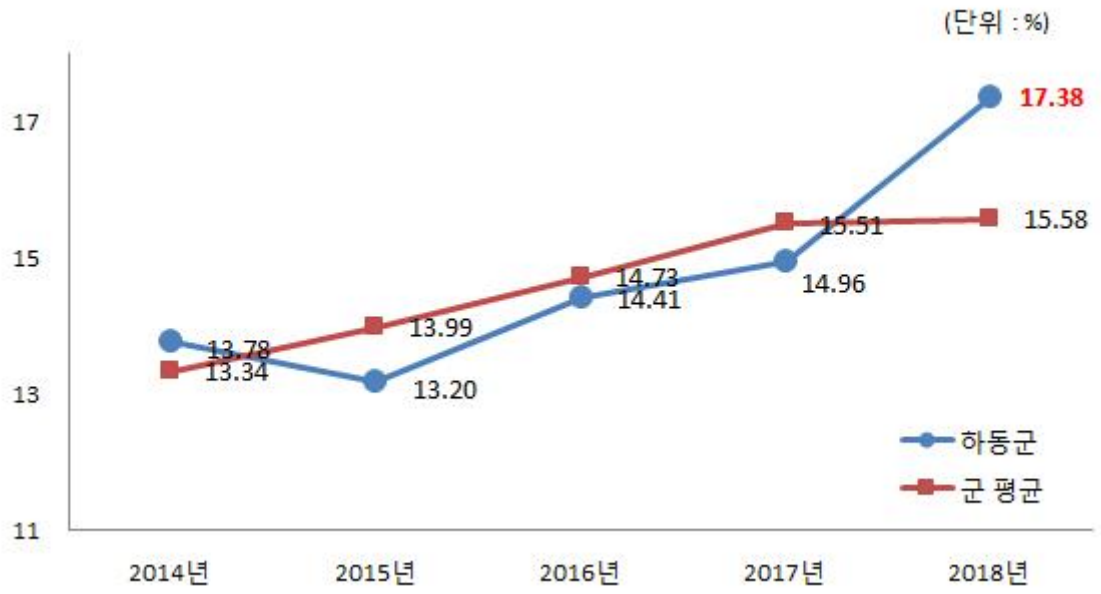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보다 대폭 상승하여 올해 17.38%로 최근 5년내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1.8% 높아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개편전 기준)는 65.8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5.82 (56.09)	415,594 (415,594)	273,529 (233,103)	142,065 (142,065)	0	0 (40,42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4.28 (58.13)	63.93 (57.97)	62.69 (56.15)	62.00 (54.77)	65.82 (56.0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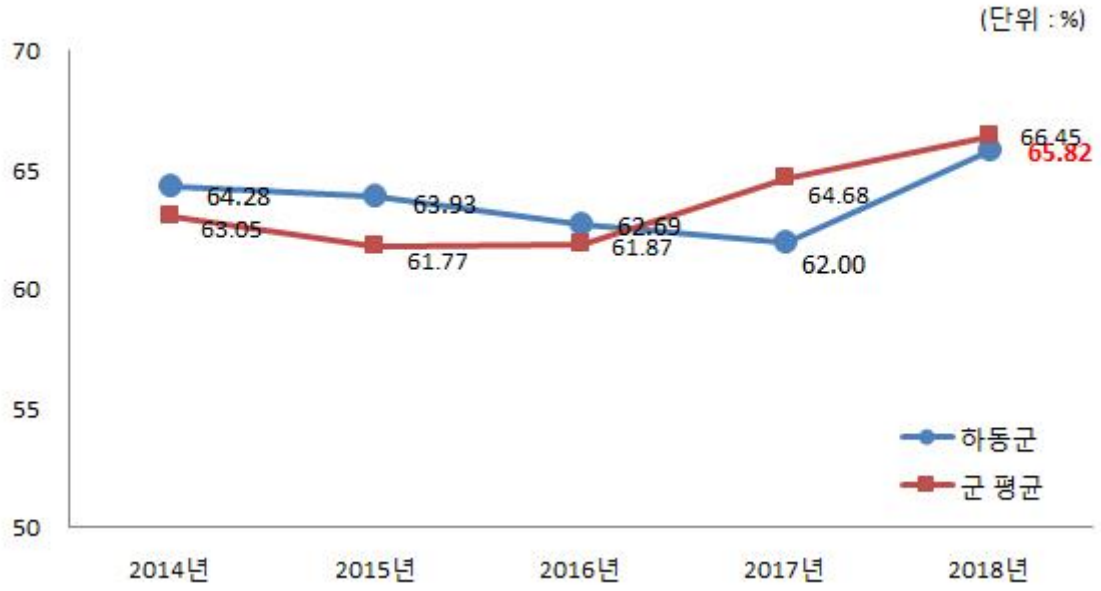

☞ 우리군은 국도비 보조금의 비중이 높은 재정여건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최대 지방교부세 확보 등으로 지난해 보다 3.82% 증가하였고,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0.63% 낮은 상황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90,172**	**422,504**	**187**	**2,717**	**2,530**	**40,690**	**425,034**	**-34,862**	**5,828**
일반회계	375,320	358,668	0	0	0	21,700	358,668	16,652	38,352
기타 특별회계	14,233	61,654	187	2,717	2,530	8,809	64,184	-49,951	-41,142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619	2,182	0	0	0	10,181	2,182	-1,563	8,61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17,047	-15,892	-19,492	-25,049	-34,862
통합재정수지 2	1,884	2,965	2,946	3,242	5,829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 1은 349억원 적자로, 특별회계 세입에 비해 세출이 많아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 407억원 포함하여 58억원 흑자를 보이고 있음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26,621**	**549,454**	**559,872**	**570,029**	**580,380**	**2,786,356**	**2.50%**
자 체 수 입	41,495	44,798	45,103	45,412	45,724	222,532	2.50%
이 전 수 입	398,921	405,807	414,767	423,948	433,307	2,076,750	2.1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6,205	98,849	100,002	100,668	101,348	487,072	4.10%
세 출	**526,621**	**549,454**	**559,872**	**570,029**	**580,380**	**2,786,356**	**2.50%**
경 상 지 출	100,352	112,083	112,491	113,578	114,612	553,116	3.40%
사 업 수 요	426,269	437,370	447,381	456,451	465,768	2,233,239	2.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5**	**23,376**
여성정책추진사업	30	3,81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0	14,51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5,048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군는 모델 1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06,983	6,014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 원 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지 원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기 타	제11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014**	
안전총괄과	하천유지관리	900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120	
건설교통과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	2,060	
건설교통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84	
건설교통과	지역개발사업	450	
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정비	100	

▸ 상기 사업명은 주민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포괄적 사업명임.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개수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계	**19**	**107**	**230**	**236**	**485,421**	**409,139**	**76,283**
기획조정실	1	6	9	10	6,091	10,010	-3,919
문화관광실	1	6	13	10	18,336	23,077	-4,741
미래전략과	1	6	11	11	12,256	14,557	-2,300
경제수산과	1	6	17	16	14,836	11,233	3,603
주민행복과	1	12	15	24	64,879	61,430	3,449
행 정 과	1	8	18	17	69,786	67,867	1,919
안전총괄과	1	3	9	7	19,087	31,386	-12,300
민 원 과	1	3	7	5	2,916	2,479	437
재정관리과	1	3	5	6	6,316	6,108	208
산림녹지과	1	3	14	12	16,479	17,800	-1,321
건설교통과	1	6	6	6	41,091	33,840	7,251
환경보호과	1	7	15	13	14,167	17,397	-3,230
도시건축과	1	5	14	6	11,938	9,392	2,546
산단조성과	1	6	8	6	90,036	6,267	83,770
보 건 소	1	6	16	19	9,867	6,636	3,231
농업기술센터	1	15	42	56	46,982	46,015	967
체육시설사업소	1	3	7	5	5,592	7,766	-2,173
상하수도사업소	1	2	2	5	33,782	34,916	-1,134
의회사무과	1	1	2	2	984	963	2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38	65.82	18.88	24.4	49.6	122.7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100	52,800	0
	부단체장		36,3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4,426	203,700	△40,72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99,360	94,20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270	
	의원국외여비		32,890	
지방보조금		22,732,274	15,424,658	△7,307,61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264,070	1,264,07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30,000	830,000	0
공무원 일·숙직비		50	5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 (http://lofin.mois.go.kr)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서 편성함.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5,736**	**2,771**
인건비 절감	273	302
지방의회경비 절감	4	7
업무추진비 절감	75	4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497	54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286	926
지방청사 관리·운영	695	944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779	-877
지방세 징수율 제고	-283	-616
지방세 체납액 축소	-878	405
경상세외수입 확충	367	-31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03	-353
탄력세율 적용	-85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3	5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7년에 우리 하동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17
법령을 위반한 지출	지방자치단체 자체 심의·자문기구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	73
	복지회관 운영 수입금 처리 및 특별회계 보조금 등 집행 부적정	44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7년에 우리 하동군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8-194호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공고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권고하오며,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기폐차를 희망하시는 차량소유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28.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8. 3. 1. ~ 3. 31.(1개월간)

※ 방문 또는 우편 접수(3. 31.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사업물량이 남는 경우 추후 공고(2차)하여 대상자 추가선정

❑ **사업물량 :** 약 50대(예산범위 내)

❑ **지원대상 :** 2005. 12. 31.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덤프터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

❑ **우선순위**

1. 대형차(배기량)
2. 연식(동일 연식일 경우에는 차량 제조날짜 순)
3. 인증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없는 차량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우선선정

2. 신청자격

- 하동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조기폐차제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3. 지원 금액 및 산정 기준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천원)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cc 이하			4,400	
3.5톤 이상 6,000cc 초과			7,700	

❑ 금액산정 지급 기준

-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4. 신청절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	대상차량 확인 및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조기폐차권고)	⇨	차량폐차 말소등록 (2개월이내)	⇨	보조금 지급청구	⇨	보조금 지급
소유자 → 군		군 →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 군		군 → 소유자

❑ 단계별 신청방법

① <u>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u>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붙임 1)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검사결과 증빙서류
  · 성능검사 결과서(검사소에서 발급)
  *점검자 의견란에 ‘조기폐차용 정상가동 판정차량’ 기재
  *차량 전·후·좌·우면 사진 별도 첨부
  · 직전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서
-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붙임 4)
  * 단, 대리 접수할 경우 위임장(붙임 5)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

② <u>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및 통지(우편 및 문자)</u>

- 통지일 : 2018. 04. 9(월)

③ <u>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보조금 청구시)</u>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붙임 3)
- 자동차말소증빙서류 1부
-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하동군 발행분)
  * 확인서 발급일 이후 2개월 이내 폐차하지 않을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5. 기타 문의

❑ 주소 : 우)52333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환경보호과

❑ 문의 : 하동군 환경보호과 조기폐차 담당자(☏055-880-2568)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끝.

[붙임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핸드폰	반드시기재	⑤FAX	
		유 선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단, 전산조회가 불가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가액	원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지자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신차 구매계획	예상구매 월		
		구매 차량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수집 · 이용목적)** 조치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 · 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성명) (서명, 날인)

하 동 군 수 귀하

[붙임 5] 위임장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

상기 위임자_____는(은) 수임자_____에게 차량번호_____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1부.

2.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018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하동군 공고 제2018- 호

하동군 인구증대 슬로건 공모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의 방향과 비전을 함축적으로 내포할 수 있는 슬로건을 발굴하여 하동군 인구정책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동군 인구증가 슬로건 공모」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3. .

하 동 군 수

1. **공 모 명** : 하동군 인구증대 슬로건 공모
2. **공모기간** : 2018. 3. 12.(월) ~ 5. 11.(금) [2개월간]
3. **응모자격** :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주민, 공무원 등)
4. **공모내용** : 슬로건(20자 내의 문구)
   - 구호형태의 짧은 한글 또는 한글·영문 혼용문구(각종 기호 사용 가능)
   - 간결하고 분명하며 이해하기 쉬운 표현

   ※ 슬로건 예시
   - 예시 1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행복한 하동!”
   - 예시 2 : “함께하는 하동, 살기 좋은 하동!”

공모주제

- ○ 하동군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극복의지와 이미지를 표현하는 내용
- ○ 하동군의 일자리(고용) 문제의 극복의지와 이미지를 표현하는 내용
- ○ 하동군이 결혼 및 양육하기 좋은 도시임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
- ○ 하동군이 명품교육 도시임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
- ○ 하동군이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시임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
- ○ 기타 하동군의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

5. **응모방법** : 이메일, 팩스(FAX),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이 메 일 : 담당자 이메일(kcm3876@korea.kr)로 응모신청서 송부
  ※ 파일제목 : 하동군 인구증가 슬로건 공모(성명)
- 팩 스(FAX) : 055-880-2159
- 우편 또는 방문 : [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2층 행정과 인구정책담당

6. 시상금

구 분	인원	시상금
계	4명	총 100만원
1등(최우수)	1명	50만원
2등(우 수)	1명	30만원
3등(장 려)	2명	10만원

※ 참가상 : 1차 선발(실시부서 자체심사)건에 대하여 하동사랑상품권 1만원권 지급(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자는 제외)

※ 심사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응모건수와 제안수준에 따라 시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7. 기타사항

- 응모는 1인당 2건까지 가능하며, 응모신청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 당선작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하동군에 귀속되며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심사점수는 공표하지 않으며,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응모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당선작이 없을 수 있음

- 동일 슬로건이 응모되었을 경우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후순위는 입상작에서 제외
- 국내·외 도시, 기업체 등의 슬로건과 동일한 것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표절, 기 공모전 출품작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상이 취소되며 시상금은 환수조치
- 당선작의 저작권(네이밍) 등에 관한 분쟁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모자(출품자)에게 있음

접수번호	

하동군 인구증대 슬로건 응모신청서

제 안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Tel)	H.P)	
	E-mail			
제안내용	슬로건			
	설명			

위와 같이「하동군 인구증가 슬로건 공모」에 응모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안 자 : (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참고사항	1. 응모는 1인당 2건까지 한정(단, 2점 모두 입선될 경우 시상금은 우수작품 1점만 시상) 2. 응모신청서를 기재하여 이메일접수, 팩스접수, 우편 또는 방문접수(택1) 3. 응모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슬로건 의미 등을 반드시 기재 4. 슬로건의 제안내용(슬로건, 설명)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유효함 5.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및 특허권 등 일체의 권리는 하동군에 귀속됨 6. 국내·외 도시, 기업체 등의 슬로건과 동일한 것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7. 심사결과 응모작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8. 네이밍에 관련된 분쟁(저작권 등)의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